도보 충청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408호 2018. 2. 2.(금)

www.chungnam.go.kr



선람	기관의장	회람						

행복충만 충청남도

발행 : 충청남도 편집 : 공 보 관 Tel:041)635-2031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입법예고

ㅇ 제2018-8호 :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충청남도 공고 제2018 - 8호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를 기치로 도-시군 간 기능재정립을 통한 도립공원 관리업무 환수 결정에 따라 시·군에 위임된 도립공원 관리사무를 환원하여 도립공원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별표1(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산림녹지과 부분 일부삭제

○ 세부내용

소관	사 무 명	개정내용
산림녹지과	도립공원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삭제>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단, 관할구역내에 한한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	
	도립공원안에서 공원사업이외의 행위허가	
	공원사업이외의 점용 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폐지시 원상회복 (원상회복 비용예치, 원상회복 집행 포함)	
	공원사업이외의 점용 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폐지시 원상회복 면제승인	
	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단, 관할구역에 한한다)	
	도립공원 비공원관리청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 징수허가	
	비공원관리청의 점용료·사용료 징수 허가 (사용재산의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재산에 한한다)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공원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징수 (단, 공원관리청 재산에 한한다)	
	도립공원 구역 안에서의 행위금지 장소 지정 공고	
	도립공원 구역 및 보호구역 안에서 출입제한 또는 금지	
	도립공원 안의 자연자원조사	
	도립공원 안에서의 영업·기타 행위제한이나 금지 (금지영업 또는 행위제한의 공고를 포함한다)	
	법령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 법에의한 허가 취소, 사업정지, 사업변경을 포함한다)	
	행정처분(허가취소)전 청문	
	도립공원대장의 비치·작성·보관(단, 관할구역에 한한다)	
	공원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공원사업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출입과 일시사용 (조사, 측량, 장애물 제거, 사전통지 등)	
	타인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하는 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발급	
	허가에 관한 협의	

4. 의견 제출

도 보

제2408호 2018. 2. 2.(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 2. 2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기후환경녹지분야 산림녹지과란 일련번호 제25번부터 제45번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산림녹지과】

소관별	일련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녹지과	1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다.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 해제의 통지 및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재결권	같은 법 제8조
		마. 산림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같은 법 제8조
		바.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아.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2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의 관리	
		가. 관리인 지정	산림보호법 제10조
		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산림보호법 제10조
	3	사방사업의 시행	사방사업법 제5조
	4	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공무원의 조사 등	사방사업법 제9조
	5	사방사업관련 손실보상	사방사업법 제10조
	6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결정	사방사업법 제11조
	7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재결 신청	사방사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8	사방시설의 관리	사방사업법 제15조

소관별	일련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녹지과	9	사방시설 수익의 귀속	사방사업법 제17조
	10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	사방사업법 제19조
	11	사방사업의 위탁	사방사업법 제26조
	12	사방사업관련 공부의 비치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13	사방사업 대장의 열람 등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1조
	14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 제3조
	15	보호수 지정 및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6	종묘 생산업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제6항, 제7항
	17	산지관리 사무에 대한 다음 사항 중 도지사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산지관리법 제19조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다. 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검사 등	산지관리법 제37조
		라. 복구비의 예치	산지관리법 제38조
		마.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 제39조
		바.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산지관리법 제40조
		사.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4항
		아. 복구의 대집행 등	산지관리법 제41조
		자. 복구준공검사	산지관리법 제42조
		차. 복구비의 반환	산지관리법 제43조
		카.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산지관리법 제44조
		타.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산지관리법 제44조의2
		파. 청문 및 과태료	산지관리법 제49조, 제57조

소관별	일련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림녹지과	18	임산물 생산, 시설 지원 및 지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19	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20	국토공원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1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2	담장 허물기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3	학교숲 조성 코디네이터 운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4	수목장림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25~45	<삭 제>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 colspan="4">현 행</th><th colspan="4">개 정 안</th></tr>
<tr><td colspan="4">[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산림녹지과】</td><td colspan="4">[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산림녹지과】</td></tr>
<tr><td>소관별</td><td>일련
번호</td><td>건 명</td><td>근거법령</td><td>소관별</td><td>일련
번호</td><td>건 명</td><td>근거법령</td></tr>
<tr><td></td><td>1~24</td><td>(생 략)</td><td>(생 략)</td><td></td><td>1~24</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td></td><td>25~45</td><td>(생 략)</td><td>(생 략)</td><td></td><td>25~45</td><td><삭제></td><td><삭제></td></tr>
</table>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17.10 31.]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자연공원법[시행 2017.7.19.]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